



## 제2조 초과보증

은행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조의 한도액이나 거래기간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초과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초과보증에 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3조 감액·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 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
    - 바. 은행여신거래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4조 주채무의 이행의무

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본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 제5조 통지 의무

- ①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에 관하여 경계·상계·면제·혼동·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그 소멸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
-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은행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통지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습니다.

##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지급요건(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 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금액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7조 특별배상금

- ① 본인이 제4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료와 지연배상금을 특별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주채무 소멸일 익일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료 해당액을 특별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8조 대위변제에 따른 상환범위**

은행이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등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3.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중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비율	%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하며 본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및 제2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 제12조 진술 및 보장, 사전구상채무의 발생 등

- ① 본인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지급보증 개시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본인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 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지급은 (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본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본인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본인의 재정상황 또는 본인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 9. 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 10. 본인은 각 거래실행일에 본인 및 본인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거래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함에 동의합니다.
  - 1. 본인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본인이 약정 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 본인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 5. 본인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본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지급보증외화표시 지급보증인 경우 아래 각 항의 특약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소송, 압류, 집행,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본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채무액의 지급이 해당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로 환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본인에게 그 잔여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국문본의 우선**

이 약정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하기로 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	-----